



살고 싶은 은평 살맛 나는 녹번동

# 2022년 제2회 주민총회 자료집



녹번동주민자치회





살고 싶은 은평 살맛 나는 녹번동

# 2022년 제2회 주민총회 자료집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주민자치계획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총회에서 숙의, 공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녹번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17일(토)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2022년 녹번동 제2회 주민총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녹번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23년에 추진할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채택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장으로 주민들이 발굴하여 제안한 주요 7개의 의제에  
대해 내용을 설명 듣고, 토론하고, 우선순위를 투표로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순은 정진헌 주민자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미경 구청장 및 내빈 축사와 함께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감사보고, 2023년 의제발표와 숙의토론 및 현장투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목차

---

- 04 인사말
- 06 주민자치회란?
- 07 녹번동 주민자치회 현황 및 활동
  - 05 - 녹번동 일반 현황
  - 06 - 녹번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 10 - 녹번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 11 - 2023년 녹번동 주민제안 마을의제 투표 항목
  - 12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25 2022년 주민자치회 사업운영비 집행현황

## 부록

---

- 29 1. 녹번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감사보고
- 34 2.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인사말



주민자치회장 정진헌

## 살고 싶은 은평, 살맛 나는 녹번동!

지난 2021년 1월 녹번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여 녹번동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가며 살맛 나는 녹번동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했습니다. 약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러 번 고민하고 반드시 필요한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녹번동 주민자치회는 올 한해 '사랑의 매실청 나눔' 사업을 통해서 협동과 나눔의 기쁨을 배웠고, '어린이 식물 해설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녹번동 마을 이야기' 책자 발간과 '나눔과 사랑 곱하기' 사업을 통해서 녹번동에 대한 애향심과 나눔의 순환을 통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소통의 길이 막혔지만, 지난 9월 '녹번동 제2회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마을 의제에 대해 토론과 투표의 과정을 거쳐 향후 녹번동의 자치계획으로 확정하는 참여와 공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녹번동의 문제를 찾고 주민들과 직접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실천력을 통해 공동체의 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란 과거의 행위를 수확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바꾸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등 한 해 동안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녹번동 주민자치회는 살맛 나는 녹번동을 만들어 가는 중심에서 늘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녹번동장 정 귀 수

##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녹번동에 부임하여 온 지 두 달이 갓 넘은 시점에서 제2회 녹번동 주민총회를 성대하게 치루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진현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본연의 일을 하는 틈틈이 기획에서부터 계획수립, 프로그램 설계, 주민총회 현장 홍보 및 투표에 참여하고 저 또한 홍보물과 초대장을 들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부탁드렸던 경험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주민총회 당일에는 그 넓은 구청 은평홀이 의자에 앉는 것도 모자라 뒤편에 서서 행사에 참여하신 주민 분들도 많았을 정도로 너무너무 성대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진정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준비와 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주민자치 위원님들, 그리고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각 직능단체 회장님과 위원님들, 총회 당일 공간이 꽉 찰 수 있도록 바쁘신 발걸음 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동장으로서 녹번동 지역 발전과 주민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도 동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이웃간 소통과 협동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원드립니다.

2022년 12월 9일

## 주민자치회란?

### 주민자치는 무엇일까요?

주민자치(住民自治)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마을의 주체로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행정사무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들이 위원이 되어 주민총회와 투표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활동의 기본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며 관심입니다.

### 은평구 주민자치회는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9.27.)에 따라 2019년 5개 동, 2020년 9월 11개 동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 누구나 마을 일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동네 일을 결정하는 동 단위 주민자치의 새로운 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주민총회란?

주민총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예산을 보고하고 동의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 회의를 말합니다.

주민총회의 주요 기능은 활동 및 예산보고, 의제결정, 의제숙의, 주민화합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결정하는 경직된 주민총회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활동 내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기획 운영합니다.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총회 당일 투표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숙의하는 전체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민총회는 동의 주요 사항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치계획을 최종 의결하는 '주민공론장'이자 '직접민주주의 장'입니다.

주민총회 참여 대상은 거주민과 생활 주민으로 구분됩니다.

거주민은 주민등록 상 해당 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이며, 생활 주민은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기관, 단체, 기업, 자영업 등)에서 근무(활동)하는 주민입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구청장의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아 주민 모두에게 공유됩니다.

이때 총회 결과 뿐 아니라 실행을 위한 계획과 주민의 참여 방법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녹번동 주민자치회 현황 및 활동

## 녹번동 일반 현황



### 동 유래

녹번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청렴한 조정의 관리들이 설·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이곳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받은 녹(祿)의 일부를 이 고개에다 남몰래 슬며시 놓아두었는데, 이를 당시 사람들이 관리가 녹을 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이 고개 이름을 '녹을 버린 고개'라 하여 '녹번이고개'라 불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녹번현은 본래 녹번현(綠樊峴), 녹반현(綠攀峴)인데 이 고개 부근에서 자연동(自然銅)의 일종으로 푸른빛을 띠는 광물질인 산골(山骨)(생골(生骨))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고, 숲이 우거져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운 지대였으므로 녹번현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출처 : 서울지명사전 저자/제공처 : 서울역사편찬원(<http://history.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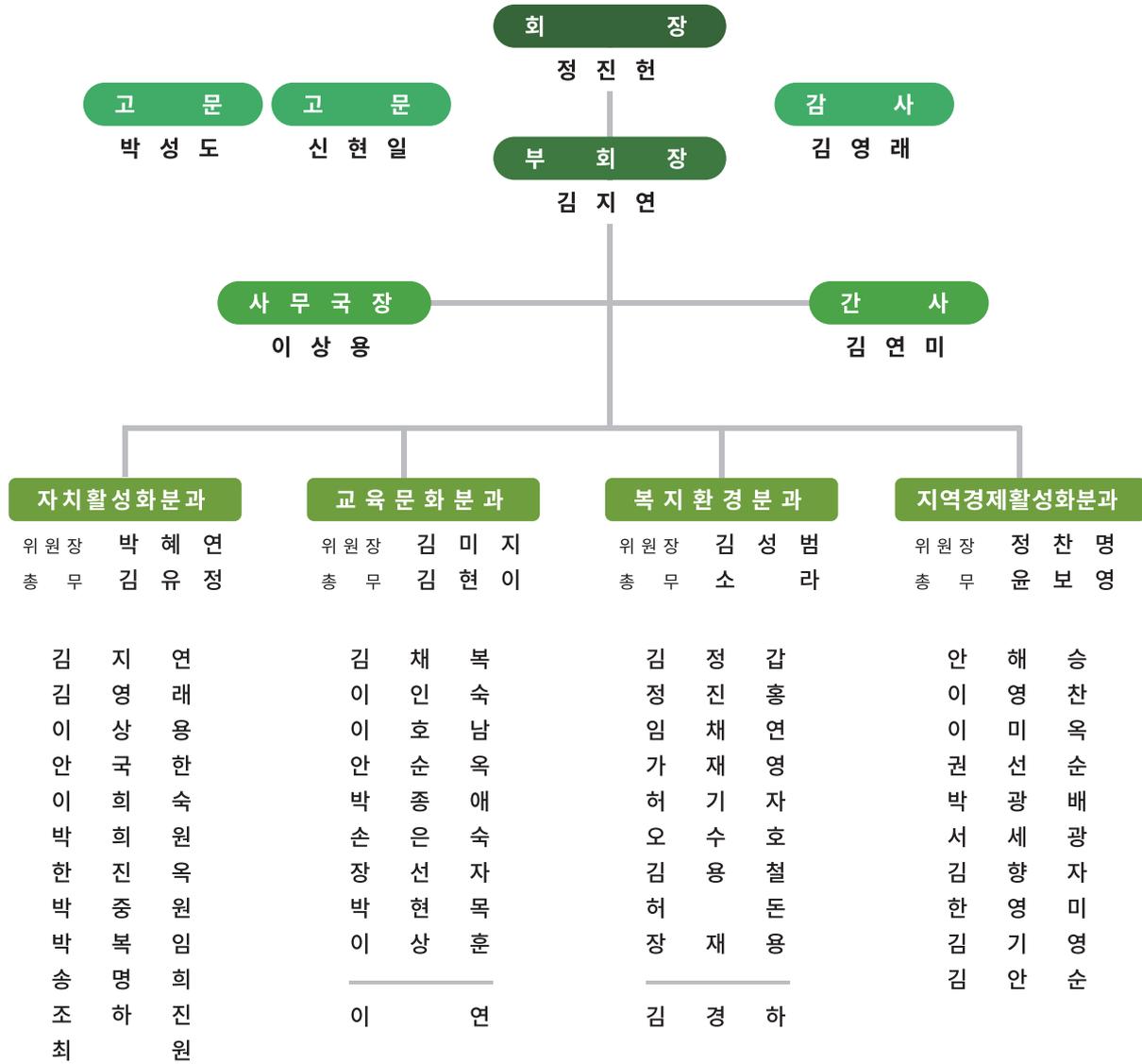
### 동 역사

1867년	한성부 북부 연은방 양철리계 지역
1894년	한성부 북부 연은방 녹현동 지역
1911년	경기도 경성부 은평면 녹번현으로 변경
1914년	녹현동과 양철리계 번현동을 병합하여 고양군 은평면 녹번리로 변경
1949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서대문구 은평출장소 관할로 변경
1955년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녹신동에 포함
1964년	서울특별시조례 제357호에 의해 녹신1동과 녹신2동으로 분동
1970년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녹번동으로 변경
1979년	은평출장소가 은평구로 승격함에 따라 은평구 녹번동으로 변경

면적	1.79km <sup>2</sup> (은평구의 6%, 37동 296반)
세대수	17,633명(2022년 10월 말 기준)
인구수	36,525명(남자 17,211명, 여자 19,314명)

# 녹번동주민자치회 조직도

2022년12월 기준



총원	성별		연령별				모집구분	
	남	여	40대 미만	40~50대 미만	50~60대 미만	60대 이상	개인	단체
50	23	27	3	6	17	24	33	17

## 분과 현황

분과명	분과 위원장	분과원수	주요사업·활동
자치활성화	1	13명 (위원13)	자치회관 및 공동체 공간 활성화, 동네배움터, 주민 욕구조사 등
교육문화	1	11명 (위원10, 주민1)	마을 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 체험활동 및 행사 등
복지환경	1	11명 (위원10, 주민1)	어르신 돌봄, 이웃 간 관계 회복, 생태환경, 도로 주거, 골목안전과 환경개선 관련 조사 활동
지역경제활성화	1	11명 (위원11)	지역경제 개발관련 연구 및 참여예산사업 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 회의체계 및 종류

구분	주체	내용	비고
주민총회	동 주민 누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자치회 운영 보고</li> <li>자치계획 의결</li> </ul>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자치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회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li> <li>예산 수립/결산 승인</li> <li>임원 선임, 위원 해촉 발의</li> <li>분과 활동 보고</li> <li>운영회칙 재/개정, 분과위원회 설치/폐지</li> <li>주민총회 자치계획 상정 등 주요 사항 결정</li> </ul>	월 1회
운영진회의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총무, 사무국장,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황공유 및 안건 논의</li> <li>회의 운영 및 조정</li> <li>분과별 사업 및 예산계획 논의/상정</li> <li>정기회의 상정안건 준비</li> </ul>	월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장, 분과총무, 분과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과 운영 계획</li> <li>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li> <li>분과 운영 계획 수립</li> </ul>	월 1회
민관협력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동장, 팀장, 담당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정보 / 자치회 활동정보공유</li> <li>민관협력 주요내용 결정</li> </ul>	주 1회
사무국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자치회 및 분과 운영 관련 사항</li> <li>일반적 지출 결의 등 회계업무</li> </ul>	주 1회
실무회의	사무국장, 간사, 담당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정보/주민자치회 활동 정보 공유 및 협력</li> <li>실무관련 수시 논의</li> </ul>	주 1회

# 녹번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2-1호

## 2022 녹번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 19조에 따라 녹번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민총회 개요]

1. 일 시 :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2시
2. 장 소 : 은평구청 은평홀 (5층) (대면총회 및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3. 주민총회 보고 및 의결 사항
  - 가. 보고 사항
    - 2022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보고
    - 2022년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감사보고
  - 나. 의결 사항
    - 녹번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결
    - 2023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 결정
4. 투표 기간 및 참여 방법
  - 온라인/거점 투표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2년 9월 15일 18시 까지
  - 온라인 투표 : 포스터 QR 코드 참조
  - 거점 투표소 운영 : 녹번동 주민센터 외
  - 당일 현장투표 : 은평구청 은평홀 (5층)
  - 만 15세(2007년 8월 17일 이전 출생) 이상 투표
5. 결과 공고
  - 결과공고 : 주민총회 실시 후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주민총회 참여 자격 등]

- 주민총회는 총회일 한 달 전(2022년 8월 17일) 녹번동 전 주민 1% (2022년 현재 367명) 이상의 투표로 개최
- 주민이라 함은 녹번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녹번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을 말합니다.

### [기타]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합니다.
- 문의 : 녹번동 주민자치회 (☎ 02-351-4634)

2022년 8월 17일



녹번동 주민자치회장 정진현



## 2023년 녹번동 주민제안 마을의제 투표 현황

사전투표	현장투표	무효	계
2,369명	244명	63명	2,5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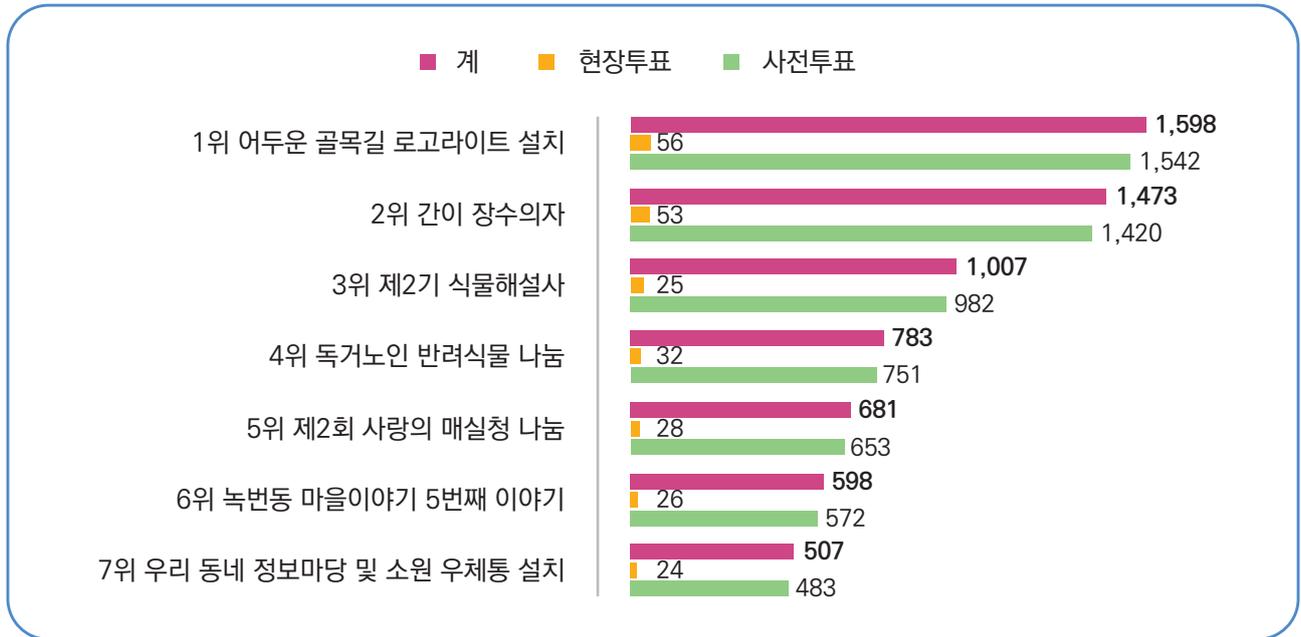
## 2023년 녹번동 주민제안 마을의제 투표 항목 (3개 선택)

NO.	마을의제	무효	금액(원)
1	녹번동 마을이야기 5번째 이야기	녹번동 일 년의 활동을 기록하고 녹번동의 변천사를 되돌아보며 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마을 책자 발간.	20,000,000
2	제2기 식물해설사	환경보전의 중요성, 자연과 식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봉사정신을 통해 녹번동 어린이들의 다양한 꿈을 펼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식물해설사 양성프로그램.	19,000,000
3	제2회 사랑의 매실청 나눔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매실청 담그기 활동을 통해 전통 음식의 계승은 물론, 협동과 나눔으로 이웃의 건강과 사랑을 실천.	18,000,000
4	간이 장수 의자 설치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접이식 의자 설치로 잠시 쉬어가는 여유와 접이식 의자라서 좁은 골목길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18,000,000
5	우리 동네 정보마당 및 소원 우체통 설치	매월 마을 주요 거점에 홍보물을 통합 게시하는 정보 부스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소원함을 설치하여 소통과 공감의 기회 제공.	10,000,000
6	독거노인 반려식물 나눔	식물을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반려식물이 어르신들의 생활 속 활력 제공.	5,000,000
7	어두운 골목길 로고라이트 설치	어두운 골목길에 빛을 비추어 귀가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운전자는 쉽게 사물을 인지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10,000,000

## 2023년 녹번동 주민제안 마을의제 투표 결과

의제명	사전투표	현장투표	계	득표율(%)
1위 어두운 골목길 로고라이트 설치	1,542	56	1,598	24.0
2위 간이 장수의자	1,420	53	1,473	22.2
3위 제2기 식물해설사	982	25	1,007	15.1
4위 독거노인 반려식물 나눔	751	32	783	11.8
5위 제2회 사랑의 매실청 나눔	653	28	681	10.2
6위 녹번동 마을이야기 5번째 이야기	572	26	598	9.0
7위 우리 동네 정보마당 및 소원 우체통 설치	483	24	507	7.6
계	6,403	244	6,647	100.0

## 투표결과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01

## 사전 투표 활동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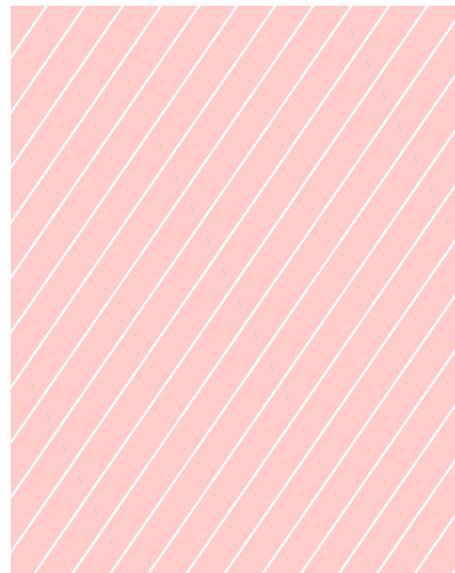
## 02 — 사전 투표 개표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03

## 주민 총회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04

## 나눔과 사랑 곶하기

2022년 10월 28일(금) 녹번동 서근린공원에서 나눔과 사랑 곶하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안쓰는 물건을 나누고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장터는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음악회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구청장님과 내빈들, 녹번동 주민들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했다.



**녹번동주민자치회**  
**가을맞이 음악회**

깊어가는 가을밤,  
녹번동 주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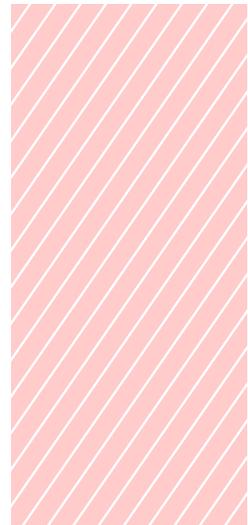
리콜라세      라뮤아트

공연시간 : 17시~19시  
출연 : 리콜라세, 라뮤아트

**나눔과 사랑 X 곶하기**  
나눔 및 판매부스 운영시간 : 12시~17시

일시 : 2022.10.28(금) 12시~19시  
장소 : 녹번서근린공원

\* 판매수익금은 녹번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05

## 사랑의 매실청 나눔



올해 6월에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이 모여 함께 세척·건조하고 매실과 원당을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담근 매실청을 11월에 걸러서 병에 넣은 다음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나눔 행사를 가졌다.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06

## 어린이 식물 해설사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식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전문가로부터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수 받는 식물해설사 교육프로그램이다.

녹번동 거주 초등학교 4~6학년중에 평소 식물과 식물문화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아는 내용을 설명하기를 즐기는 어린이들이 참여 했다. 무더위와 숲에서 모기에 시달려 가며, 매주 토요일 6주간의 교육을 통해 실습 활동을 하였고, 10월에는 수료식과 함께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장과 수료증을 수여했다.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07

## 주민 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은평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같은 날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은평구 주민자치회 활동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녹번동 주민자치회는 어린이 식물해설사와 연계한 화분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과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불광천 특설 수상 무대에서 열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는 녹번동 자치회관 경기민요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맘껏 뽐냈다. ‘세계문화퍼레이드’에서 녹번동 주민자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한 고운 한복을 입고 불광천을 행진하였다.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08

## 골목길 도로명 주소 미니 안내도 설치



비정형 이면도로가 많은 복잡한 주택가를 기준으로 교차로마다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 주소 미니 안내 지도를 설치, 포괄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나 방문객이 현 위치 기준의 주변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09

## 깔끔이 전봇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난립한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와 함께 원천적인 예방에 나섰다.

특수코팅 처리돼 벽보및 스티커의 부착을 원천 차단하는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녹 번동을 상징하는 색을 이용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했다. 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감전방지, 야간안전 사고 예방 등 부가적 기능도 더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후 정비에서 부착방지로 선제적 예방과 주민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의 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거리가 조성 될 것이다.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10

## 2023년 신규 자치위원 모집



**2023 은평구 16개동**

#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는 주민대표조직

**모집기간** 2022년 11월 중

**임기** 2023. 1. 1. ~ 2024. 12. 31.

**신청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주민자치학교** 접수 후 ~ **2022. 11. 27.(일)까지** (6시간 이수)

**문의** 신청기간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동에 문의

녹번동	02-351-5006	응암1동	02-351-5214
불광1동	02-351-5033	응암2동	02-351-5244
불광2동	02-351-5063	응암3동	02-351-5275
갈현1동	02-351-5095	신사1동	02-351-5336
갈현2동	02-351-5125	신사2동	02-351-5364
구산동	02-351-5154	중산동	02-351-5411
대조동	02-351-5185	수색동	02-351-5424
역촌동	02-351-5304	진관동	02-351-5476

**주민누구나**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해당 동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 종사자 포함

**주민자치학교 수료**

온라인교육 [elearning.or.kr]  
은평배움모아 사이트 가입  
↓  
이러닝학습  
↓  
주민자치(6시간)

**공개추천 선점**

개발성과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 공개추천

##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

# 11

## 팍두기 담그기 행사



주민자치회 회장과 사무국에서 여름 내내 정성스럽게 가꾼 무공해 유기농 무우를 수확해서 열린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열린학교 학생들은 맛있는 팍두기를 만들었다.



## 2022년 주민자치회 사업운영비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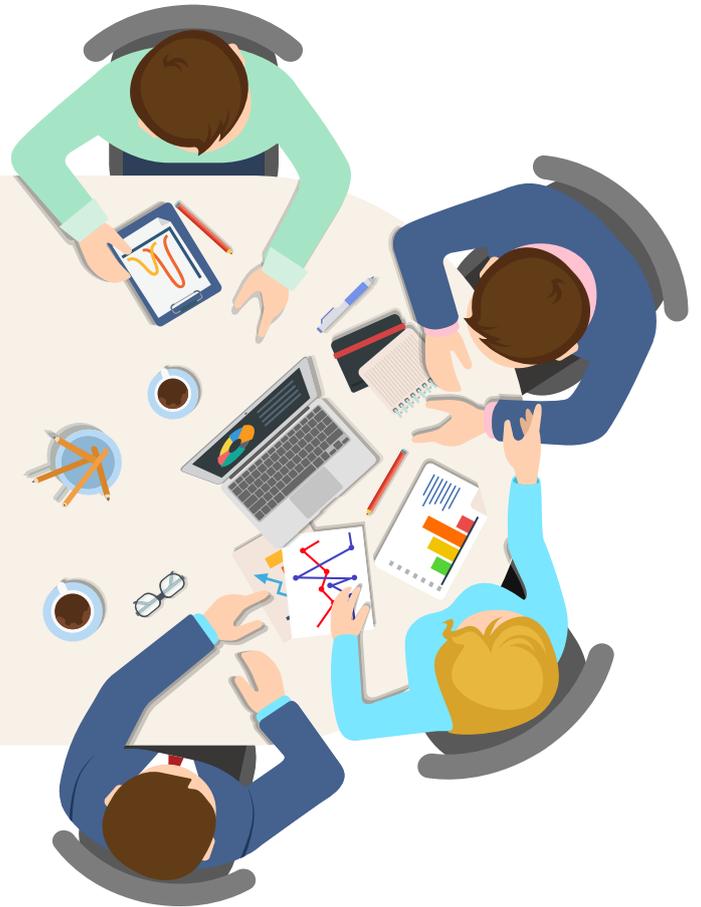
(금액단위 : 천원, 2022년 12월 10일 기준)

구 분	항목	예산액			집행금액	잔액
		계	시비	구비		
총계		166,264	68,000	100,264	150,627	15,635
주민자치회	소 계	34,400	9,000	25,400	31,099	3,301
	사업운영비	6,000	6,000		5,899	101
	간사활동비	14,400	3,000	14,000	13,200	1,200
	사무국장활동비	14,000		14,000	12,000	2,000
주민자치 활동지원 (주민세 환영)	소 계	71,914	39,000	34,914	59,578	12,334
	의제개발비	27,914		27,914	20,815	7,099
	나눔과 사랑공하기	15,000	15,000		11,262	3,737
	녹번동 5번째 마을이야기	12,000	12,000		10,576	1,424
	사랑의 매실청 나눔	17,000	12,000	5,000	16,925	74
주민자치회 (시)참여예산	소 계	20,000	20,000		20,000	0
	어린이 청소년 식물해설사	20,000	20,000		20,000	0
주민자치회 (구)참여예산	소 계	39,950		39,950	39,950	0
	골목길도로명주소	14,950		14,950	14,950	0
	미니안내도 설치					
	깔끔이 전봇대	25,000		25,000	25,000	0



# 부록

1. 녹번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감사보고
2.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부록1. 녹번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감사보고

## (1) 감사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5조 3항
- 감사일시 : 2022. 07. 18 ~ 07. 19 10:00 ~ 15:00
- 감사장소 : 녹번동 주민자치회 회의실
- 감사명칭 : 2022년 상반기 녹번동 주민자치회 자체 감사
- 감 사 자 : 김영래

## (2) 감사내용

### ① 사업부문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운영세칙 수립의 자발성과 의견수렴	주민자치회 운영결과 운영세칙에 준하여 정기회의에서 의견 수렴함.
2	분과위원 모집과 분과구성의 적절성	신규위원 위촉과 해촉위원에 대한 행정정비 및 업무인계 적절함.
3	분과별 자치계획서 작성	분과별 사업계획서 작성, 토의, 숙지, 열람하고 있음.
4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준비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함.
5	주민총회	2022.09.17.(토) 14:00 개최 예정임. (장소 : 은평구청 내 은평홀)
6	주민총회 결과 정리와 주민공유	주민총회 운영방식에 따라 처리
7	사업평가와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함.
8	민주적 회의 운영 (분과회의, 사무국회의, 민관협력회의, 임원진 또는 운영 회의)	민관협력회의의 진행이 부진함.
9	정기회의의 민주적 운영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월별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 비치함.

## 부록1. 녹번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감사보고

### ② 사업부문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주민자치회 예산수입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 : 예산과목 준수 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예산과목 준수하고 적정하게 집행함.
2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사업자금 집행하고, 비목지정 필요 시 정기회의 절차 진행함.
3	예산편성 시 모든 예산의 누락 여부	예산 누락분 없음.
4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전용통장 개설함.
5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산목적 외 사용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6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 잔액 일치 여부	회계장부와 통장 잔액 일치함.
7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2022년 2월 17일 신용보증보험 가입함. (금액 : 일 천 오백 만 원)
8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적정함.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되어 자치회관의 조속한 운영이 필요함.)
9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증빙서류 모두 작성 첨부되어있고, 해당 입금계좌에 이체하여 적정처리함.
10	예산의 허위성 지출 여부	허위성 지출사항 없음.
11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적정성	근거자료에 의거 적정 지급함.
12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규칙에 의거 원천징수 후 전액 이체 납부함.
13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및 사무국장 활동비 지급의 여부 (기타소득세 납부 여부)	활동내역 기록 관리 유지하고 있고, 지출결의서 결재 후 지급함. (익월에 기타소득세 납부함.)

### ③ 행정서류와 각종 문서, 장부 및 직인 관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사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관리, 작성 및 장부 비치되어있음.
2	직인의 보관관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내용 변경 추가 필요 (사무국장 관리)
3	직인대장과 문서대장	관리, 작성 및 장부 비치되어있음.
4	주민자치회 통장 관리 대장	관리, 작성 및 장부 비치되어있음.
5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관리, 작성 및 장부 비치되어있음.
6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관련 서류	관리, 작성 및 장부 비치되어있음.
7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진회의 회의록 비치	각 회의별 회의록 비치되어있음.
8	연 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 여부	관리, 작성 및 장부 비치되어있음. (공유주방 건물 검토 후 결정함.)

### (3) 지적사항

- 1) 사무국체제에 따른 사무국장, 간사의 조속한 업무분장 필요함.
- 2) 공유주방에 대한 관리운영규정 제정 필요함.
- 3) 직인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반영 필요.
- 4) 사업추진 시(사랑의 매실청 나눔 사업 등) 업체 선정, 가격 결정, 계약 방식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5) 지출결의서 등 결제지연 또는 누락이 없도록 관리 철저
- 6) 민관협의회 진행이 부진하여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부록1. 녹번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감사보고

### (4) 총평

2022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사업부문, 회계부문별로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사업추진의 제약사항이 많았지만 주민자치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로 사업추진(업체선정 등)의 투명성,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 절감 등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들은 운영세칙에 반영될 것은 조속히 반영하고, 보완 개선될 사항은 현장보완을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사무국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에 좀 더 주민자치위원들 상호 간에 소통과 즐겁고 보람 있는 봉사로 유대감을 갖고 발전하는 체계적인 모습의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사진

## 녹번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종류	녹번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녹번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1. 사업감사 1)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의 민관협력과 개방성 2) 회의운영과 분과운영의 민주성 3) 주민 의견수렴 과정 및 절차 ※ 회의록 및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회의, 민관협력회의, 실무회의  2. 회계 감사 1)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2) 집행기준 준수와 증빙 자료 ※ 지출 및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
조치사항	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종합의견	2022년 상반기 사업부문, 회계부문 감사결과는 업무집행 내용과 주민자치회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회의록 및 장부의 편철 등 미비한 부분은 현장 보완 정리하였으며, 운영세칙과 주민자치회 예산 및 집행지침 기준에 따라 적정하였음.

별첨. 1. 녹번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제출인 녹 번 동 감사 ( 김 영 래 )

은 평 구 청 장 귀 중



## 부록2.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제정	2021. 03. 18. 3월 정기회의
일부개정	2021. 04. 15. 4월 정기회의
전면개정	2022. 04. 21. 4월 정기회의

2022. 4.

녹번동 주민자치회

# 은평구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제정) 2021. 03. 18  
(일부개정) 2021. 04. 15  
(전면개정) 2022. 04. 2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녹번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녹번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란 녹번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회장 . 부회장 . 감사를 말한다.
6. “운영진”이란 제5호의 임원 . 간사 . 분과위원장·분과총무를 말한다.
7. “고문”이란 녹번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과 녹번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및 직전 녹번동 자치회장을 말한다.
8. “자치회관”이란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 복지 . 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녹번동 주민자치회”(이하“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녹번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부록2.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8조(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례에 따라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한다.
- ④ 예비자가 없는 경우, 조례 제9조제2항1호에 해당하는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및 타 직능단체 겸임을 3개 이내로 제한한다. 직능단체의 범위는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에 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단, 임원은 제외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5.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위 제①항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장에게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①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꺾여 된 임원에 대한 신임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이내(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이 규정하는 임원 외의 운영진 구성은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간사 1명
2.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분과총무 각 1명

**제12조(임원·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인 출마 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녹번동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하고,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에 소속된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분과장이 된다.

## 부록2.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3조(임원 선출관리위원회)** ① 임원선출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입후보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임원·운영진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주민자치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 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운영진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운영진은 제22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운영진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임원·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사임)** 임원 또는 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은 업무인수 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결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임원 결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결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결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 분과위원장, 분과총무 결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 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 .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녹번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 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주민을 분과원으로 한다.
- ④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 위원 5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총무를 주민자치위원 중에 선출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 ⑦ 분과총무는 분과회의 결정사항과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⑧ 분과원은 분과활동을 신청한 해당동 주민으로서 3개월 이상 분과활동을 한 주민을 의미하며,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분과회의 참석 시 의결권은 있다.

## 부록2.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 ·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2. 운영진회의
  3. 민관협력회의
  4. 분과회의
  5. 주민총회
-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 ③ 간사는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며, 각 분과는 제4호의 회의 종료 후 분과장 또는 분과총무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2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 다만, 필요할 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제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운영세칙 제2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3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진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총무로 구성한다.
-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
- ⑤ 운영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4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③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분과위원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2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만 15세 이상의 주민(녹번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1%(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단, 온라인 주민총회 시 온라인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⑧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변경(제정 . 개정 . 폐지)
2. 위원의 위.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 부록2.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제28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
  2.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자치회관 운영

- 제29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활성화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 제4장 자치회관 운영

- 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받은 사업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보고 한다.

**제34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 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이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간사는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 대장
4. 문서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 부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의 정기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는 회비계좌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회비납부자 및 주민자치회 관련자(동장, 담당 직원 외)의 애경사
2. 민관협력행사(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등) 시 단체경비로 지급한다.
3. 주민자치위원 과반수 찬성 시 기타 다른 용도로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애경사에는 화환과 경조사비 20만원을 지급한다.

④ 1인당 애경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계가족(부모, 자녀)에 한한다.

⑤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회비 미납 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신규 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회비를 납입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⑧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제2회

## 녹번동 주민총회 자료집

발 행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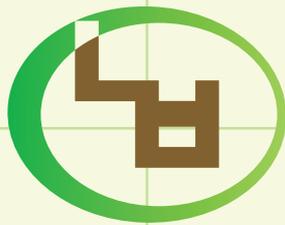
발 행 인 정 진 현

발 행 처 녹번동 주민자치회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전 화 번 호 02-351-4921

디자인·제작 명경어울림



녹번동주민자치회